

1. 개정이유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·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규정('19.11.26 개정·공포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률로 상향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34조제1항)

법률로 상향 규정된 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”의 출입·검사 요건에 대해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26조의2제1항”으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, “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26조의2제1항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기재하여야”는 “기재해야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출입검사 등)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	제34조(출입검사 등) ① (삭제)
1.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	
2.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	
3.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에 관	① ----- ----- 법 제26조의2제1항----- ----- -----

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
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
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
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
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
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
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
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
하여야 한다.

----- 통
지해야 ----- 긴급히
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
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
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
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② -----

법 제26조의2제1항-----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 기재
해야 -----.